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9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3. 4. 5.

발 의 자 : 김성곤 · 조정식 · 이윤석
최민희 · 신장용 · 배기운
최원식 · 이인영 · 도종환
주승용 · 이해찬 · 전순옥
이한성 · 전해철 · 강창일
윤관석 · 남인순 · 안홍준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당 등록 시 강령과 당헌을 신고하도록 하고,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, 정당이 강령과 당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강령·당헌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의 정책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 자료이며 정책선거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 그러나 정당의 등록신청 이후에는 해당 정당의 강령이나 당헌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어, 국민들은 정당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행 강령·당헌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, 개정 이전 사항이나 소멸된

정당의 강령·당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등록신청 또는 변경 등록신청 받은 강령·당헌을 보존하도록 하고,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함과 동시에 정책 선거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제1항 및 제14조(변경등록)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(또는 기본정책)과 당헌을 보존하고,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강령·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강령·당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

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신청 또는 변경 등록신청받은 강령·당
헌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(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 의 기재사항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8조(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 의 기재사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 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제1 항 및 제14조(변경등록)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(또는 기본 정책)과 당헌을 보존하고,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 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 여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제3항에 따른 강령·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,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